

제2522호
2017. 6. 14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
편집인: 공 보 실 장 류 용 결
전화: 3396-4965
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선	기 관 의 장
람	

구 보

- 고 시
 - 제2017-46호 :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
 - 제2017-47호 :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3
 -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고시 제2017-1호 :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 4
- 공 고
 - 제2017-448호 :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8
 - 제2017-449호 : 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(추가) 10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65 / FAX.(02)3396-9024
● 구보는 수시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
람												

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46호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신축 건물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06월 1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4길 25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기준
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179외 9필지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4길 25	2010.6.30	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 구간의 기초번호 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7.03.29.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47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06월 1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5길 40 외 2건

연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자	폐지 사유
1	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5길 40	2017.06.14	건물말소
2	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5길 42-4	2017.06.14	건물말소
3	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9길 43-18	2017.06.14	건물말소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됩니다.

●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고시 제2017-1호

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

1. 건설교통부고시 제317호(1983.09.30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-414호(2011.12.29.) 정비구역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3-66호(2013.07.17.)로 사업시행인가 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3-107호(2013.11.27.)로 관리처분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-87호(2016.10.05.)로 공사완료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-37호(2017.05.17)로 최종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 고시한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』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내용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사무소(☎02-3452-0100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7년 6월 14일

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이창희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
나.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(지적확정측량 결과에 의함)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48번지 일대
- 면 적 : 4,141.5㎡(대지면적 : 2,991.5㎡, 정비기반시설면적 : 1,150.0㎡)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이창희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4층(역삼동, 그레이스타워)

라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: 2013. 11. 27.(최초), 2017.05.17.(최종변경)

마. 공사완료 고시일 : 2016. 09. 29.

바. 이전고시 내역

- 사업시행면적

종 전			확 정		
대지면적		2,991.5㎡	대지면적		2,991.5㎡
정비기반시설	도로	58.6㎡	정비기반시설	도로	58.6㎡
	공원	1,087.7㎡		공원	1,091.4㎡
계		4,137.8㎡	계		4,141.5㎡

○ 건축시설의 종류 및 규모

- 용도 :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
- 높이(층수) : 119.95m (지상26층/지하7층)
- 건축면적 : 1,775.33㎡
- 건축연면적 : 53,369.33㎡

※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(이전고시 대상면적) : 별첨

○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 :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

- 토지

순 번	지번	지목	면적(㎡)	소유자	이전설정되는소유권 이외의권리명세		비 고
					종목	권리자	
1	을지로2가 211	대지	146	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	-	-	대지
2	저동1가 114	대지	2,845.5	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	-	-	대지
3	저동1가 115	도로	24.5	서울시 중구	-	-	무상귀속 공공용지
4	저동1가 116	도로	3.2	서울시 중구	-	-	“
5	저동1가 117	도로	2.7	서울시 중구	-	-	“
6	저동1가 118	도로	28.2	서울시 중구	-	-	“
7	저동1가 119	공원	50.1	서울시 중구	-	-	“
8	저동1가 120	공원	500.6	서울시 중구	-	-	“
9	저동1가 121	공원	540.7	서울시 중구	-	-	“
계			4,141.5				사업시행 완료면적

- 건축시설

구 분	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, 문화및집회시설(㎡)	비고
계	53,369.33	
토지등소유자	24,651.53	
체비지	28,717.80	
보류지	-	

-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처분내역 : 없음

사. 관련서류 열람장소 : 사업시행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(☎02-3452-0100)

연도	소유자	총전의 토지 및 건물						비고	분양 예정의 대지 및 건물						청산 징교부		비고
		지번	토 지(m ²)		건 물(m ²)				소유자	지번	토 지(m ²)		건 물(m ²)	적수			
			지목	지적	구조	용도	면적				지목	대지지분			분양면적	징수교부	
1	(주)하나자산신탁	을지로2가168-32	대	65.20					(주)하나자산신탁	을지로2가211, 저동1가114	대	1,381.79	24,651.53				
		을지로2가 168-33-1	대	1.80													
		을지로2가 168-34	대	7.40													
		을지로2가 1638-41	대	8.00													
		저동1가43-3	대	26.40													
		저동1가43-6	대	65.50													
		저동1가48	대	2,150.60		근생시설	4,758.30										
		저동1가48-19	대	17.30													
		저동1가67-1	대	45.60		근생시설	249.20										
		저동1가73-2	대	0.80													
		저동1가79-1	대	165.30		근생시설	164.80										
		저동1가79-3	대	64.50													
		저동1가79-6	대	19.80													
		저동1가79-7	대	16.90		주택	74.40										
		저동1가79-10	대	2.90													
		저동1가84	대	46.30													
		저동1가87	대	165.30		주택	344.10										
		저동1가88	대	49.60		근생시설	79.30										
		저동1가88-1	대	17.90													
		저동1가90-5	대	66.10		근생시설	720.60										
저동1가91-4	대	185.80		근생시설	39.70												

연번	소유자	총전의 토지 및 건물							비고	분양 예정의 대지 및 건물				
		지번	토 지(m ²)		건 물(m ²)			소유자		지번	토 지(m ²)		건 물(m ²)	
			지목	지적	구조	용도	면적				지목	대지지분		분양면적
		저동1가92-1	대	139.80										
		저동1가 92-2	대	179.50		근린생활시설	142.20							
		저동1가90-10	대	148.80		근린생활시설	347.10							
		저동1가90-1	대	63.50										
		저동1가87-3	대	11.60										
		저동1가92-3	대	186.80		근린생활시설	196.30							
		저동1가 72-5	대	3.20										
		저동1가 72-7	대	2.70										
		저동1가 90-11	대	19.80										
		저동1가 91-3	대	3.10										
		저동1가 39-3	대	1.20										
		저동1가 46	대	0.20										
		저동1가 84-1	대	46.30										
소계			3,995.50				7,116.00		환 지 소계			1,381.79	24,651.53	
2	서울시	저동1가72-2	도	57.40					체비지(사업시행자)	을지로2가211, 저동1가114	대	1,609.71	28,717.80	
	서울시	저동1가77-3	도	10.10										
	서울시	을지로2가148-135	도	46.00										
	중구	을지로2가168-51	도	8.60										
소계			122.10											
계			4,117.60											
확정예정측량으로 인한 면적정정			4,141.50											
총 계			4,117.60				7,116.00		총 계			4,141.50	53,369.33	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-448호

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

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)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06월 14일

중 구 청 장

1. 공고의 명칭 :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

2. 공 고 기 간 : 2017. 06. 14. ~ 2017. 06. 28.

3. 공 고 대 상

- 자동차등록번호 : 충북1머49**외 3대
- 소유자명 : 신화*외3대
- 운행정지 명령일자 : 2017. 05. 01. ~ 05. 31.
- 운행정지 사유 : 소유자 요청

4.공 고 내 용

○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.

○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,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,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○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(02-3396-6239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*운행정지 자동차 현황**

운행정지상태	자동차등록번호	소유자명	소유자등록번호	소유자주소
등록	충북1대49**	신화*	570816-2*****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바길 1*, ***호(신당동, 효성빌라)
등록	15도89**	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	110111-2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*, 11층 ****호(회현동2가, 남산스테이트타워)
등록	08라07**	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	110111-2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*, 11층 ****호(회현동2가, 남산스테이트타워)
등록	49수05**	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(주)	110111-2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*, 11층 ****호(회현동2가, 남산스테이트타워)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-449호

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(추가)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중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.

2017. 6. 14.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(인)

가. 부의 안건 : 결산안 1건, 승인안 1건, 계획안 1건

구분	부 의 안 건 명	주관부서 (연락처)
결산안	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	재무과 (3396-5032)
승인안	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	기획예산과 (3396-4913)
계획안	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	재무과 (3396-5012)

나. 기 타

- 상세한 사항은 주관부서 또는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(☎3396-493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